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처리공정의 추가 등으로 인한 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서울시 영등포정수센터내에 기존 정수장을 철거하고 정수장을 재건설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재건설 내용에는 일반정수처리공정 외에 고도정수처리(오존처리+활성탄)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으며 정수처리 용량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방지시설(배슬러지저지+농축조)은 재건설하지 않고 기존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배출시설의 변경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중 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 방법 및 처리공정은 변경 없습니다.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처리공정의 추가 등으로 폐수처리계통이 변경되는 등 신고증명서 상 적힌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에 해당합니다.

**Q** 폐기물 매립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가능한지?  
 폐기물 매립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가능한지 법규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매립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고 차후 매립 예정입니다. 매립예정지 위에 철제구조물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하부에 향후 폐기물발생시 매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폐기물이 슬러지 형태라 구조물을 설치하여도 매립에는 기술적 문제가 없습니다.

**A** 매립예정지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의 설치 승인 시 운영 계획에 따라 향후 매립시설의 안정적인 사용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매립예정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같은 건축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20년 이내에는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 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사용종료 매립지의 하중, 파손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 관련 신고 사항은?  
 저희 사업장은 수질4종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배출시설에서는 거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나 생활계 쓰레기(일부는 종량제 봉투에 처리, 그 외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사업장폐기물신고대상에 배출시설 설치 사업자는 1일 100kg이상이면 신고대상이고 그 외는 300kg 이상이면 신고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장과 같이 배출시설과 전혀 상관없는 폐기물의 발생은 1일 100kg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300kg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 발생량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합산한 량)이 1일 평균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폐목재의 인계서 작성여부?**

사업장에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중 폐목재에 대한 인계서 작성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목재는 인계대상이 아닌것으로 나오는데요, 지난번 Allbaro system에서는 폐목재류를 인계서 작성하라고 공지로 한번 본 것 같아서... 어떤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목재는 동법 규정에 의거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Q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여부?**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업종: 배전용전기회로개폐, 보호및접속장치제조업(분류번호: 31201))로써, 플라스틱 원료(나일론, PBT)를 사출하는 공정이 있으며, 부지면적이 1만㎡이상입니다. 그리고, 금형 세척시설이 설치 되어 있으나, 폐수배출량이 규모 미만으로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만약, 폐수량 증가로 인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할 경우,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시설 중(5.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 해당되어, 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귀 사업장은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과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면적이 1만㎡이상이고,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종의 사업장은 2006년 4월 1일부터 최초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하는 사업자부터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수질검사 일반세균 기준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할 때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높아 부적합 판정을 받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반

세균이 면적이 약한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업체에서는 공기하고 접촉만해도 검출된다고 하는데, 정수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정수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정수기 수질검사의 일반세균 기준이 100이하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합한 기준인지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 및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규칙」(별표1)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중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사용 중인 정수기(통과수)의 경우에도 동 수질기준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먹는 물 중 일반세균에 관한 수질기준 완화는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정도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장기적인 연구·조사를 거쳐 관련규정 개정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